

보건복지위원회
소관

서울특별시 성북구
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
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

성 북 구
(보건위생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

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의 안 번 호	494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5년 9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필요성

우리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 센터 위탁기간 만료일(2025. 12. 31.) 도래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(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)을 추진함에 있어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(재위탁)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추진근거

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
-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시설 :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
- 나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28. 12. 31.(3년)
- 다. 위탁방법 : 「수탁기관 선정위원회」 심의에 의해 선정
- 라. 위탁사무내용
-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소 등록 관리
 - 등록 급식소 위생,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
 - 대상별 방문 및 집합교육(시설이용자, 조리원, 원장, 교사 등)
 - 급식관리 매뉴얼,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

마. 기존 위탁현황

기관명	소재지	규모	위탁기간(최초 위탁일)
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	장월로1마길 56 (월곡2동)	151m ²	2023. 1. 1.~2025. 12. 31. (2011. 4. 6.)

*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5. 7월부터 위탁 운영 중(기존 위·수탁협약 변경)

3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고,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
- 사업의 연속성, 종사자의 고용 승계 등을 준수

4. 향후계획

- 수탁자 모집공고 및 공모접수: '25. 9. ~ 10.
-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: '25. 10. ~ 11.
- 위탁계약 체결: '25. 11. ~ 12.

○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: '26. 1. ~

5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가. 관계법령

(1)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

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 · 운영)

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“급식소”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· 도지사가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·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
② 삭제 <2023. 8. 8.>

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 · 운영할 수 있다.

(2)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

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)

- ①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-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(3)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설치 및 운영 등)

-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「어린이식생활법」 제21조 및 「사회복지시설급식법」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 · 운영한다. (개정 2020.12.31, 2025.04.10.)
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급식소 위생 · 영양관리 관련 실태조사,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(개정 2025.04.10.)
 2. 급식소 위생 · 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· 컨설팅 (개정 2025.04.10.)
 3. 위생 · 영양관리 교육자료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(개정 2025.04.10.)
 4. 시설유형 · 대상자별 식단 개발 · 보급 및 영양 · 식사지도 (신설 2025.04.10.)
 5.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관리 지도점검 (개정 2025.04.10.)
 6. 어린이급식소의 경우 어린이, 조리원, 원장 · 교사,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, 정보 제공, 홍보 등 (신설 2025.04.10.)
 7. 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(신설 2025.04.10.)
 - 가.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, 교육, 상담 및 정보 제공
 - 나.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, 영양관리카드 작성 · 관리, 영양상담
 8.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(4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

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